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7820 판결 [보증채무금]

판 결 요 지

건◆◆◇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어음지급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보증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조합이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면서 그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료만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자와 보증채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이행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보증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로써 보증사고 발생의 위험이 확대된 경우에까지 보증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위 조합의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은 위 조합이 판매하는 보증상품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의 이행기일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보증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규정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782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2. 30 선고 99나53867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전 문

당 사 자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린산업

피고, 상고인 건◆◆◆조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9. 12. 30. 선고 99나538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97. 4. 25. 소외 고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산업용 재관 신축공사 중 에이엘씨(alc)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1997. 4. 25.부터 1998. 8. 30.까지, 계약대금 2,365,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선급금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 118,250,000원을 지급받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998. 9.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1997. 4. 25.부터 1998. 10. 2.까지로 변경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지급보증을 위한 소외 회사와의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1998. 7. 21. 하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271,120,630원, 보증기간은 1998. 6. 21.부터 1998. 10. 29.까지로 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준 사실, 소외 회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약 3개월 내지 4개월인 어음으로 결제하여 왔는데,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1998. 9. 24. 지급기일이 각 1999. 1. 31.로 된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85,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1998. 11. 10. 지급기일 1999. 2. 28.로 된 액면금 12,5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1998. 11. 28. 지급기일이 1999. 3. 31.로 된 액면금 19,398,969원인 약속어음 1매(이하 위 약속어음 4매를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 교부한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1998. 10. 2. 완공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소외 회사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4매 액면금 합계금 147,398,969원(=30,000,000원+85,000,000원+12,500,000원+19,398,969원)의 하도급 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 및 제3조 제2호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이므로 피고는 보증약관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을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은 보증책임의 한도 및 보증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계약에 따라 보증서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채권인 하도급대금지급채무 자체가 이미 보증기간 내에 발생되어 있어 피고에게 전혀 불리하지 아니한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책임마저 이를 면하게 하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한편 소외 회사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약 3개월 내지 4개월인 어음으로 결제하여온 사정 아래에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대금지급채무 중 보증기간 내에 대금지급기일이 있는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정하게 되면 피고의 보증책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지급보증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어 불공정한 조항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위 약관 제3조 제2호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사고의 위험성과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에 따라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일정한 보증 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하도급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연장 등의 사유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추가보증신청에 의하여 추가 수수료를 징수한 후 추가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면서 그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료만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자와 보증채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이행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보증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로써 보증사고 발생의 위험이 확대된 경우ye까지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의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은 피고가 판매하는

보증상품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의 이행기일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보증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약관 제3조 제2호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관 제3조 제2호를 무효라고 보았으니 거기에는 보증약관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다만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통상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약관 제3조 제2호를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월 1회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완료시기 및 이와 같은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시기등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 · 교부로 기존채무의 변제기가 변경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 할 필요없이,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주심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손지열